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29

발의연월일: 2021. 2. 1.

발 의 자:고용진・기동민・김경협

김두관 · 김수흥 · 김주영

박홍근 • 양경숙 • 양향자

이광재 · 정성호 · 정일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측면을 고려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(안 제77조의3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2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례) 제7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7조의3(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제77조의3(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(생 략)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 (2) ----당 토지등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 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 22년 12월 31일-----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 한다. 다만, 개발제한구역 해제 일부터 1년(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「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③・④ (생 략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